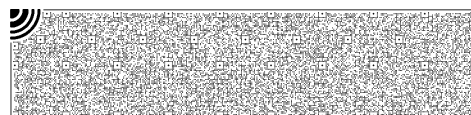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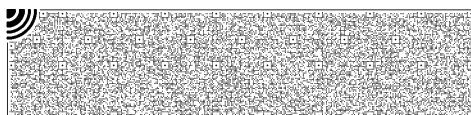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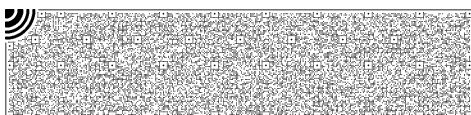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 - 151호

의 안 명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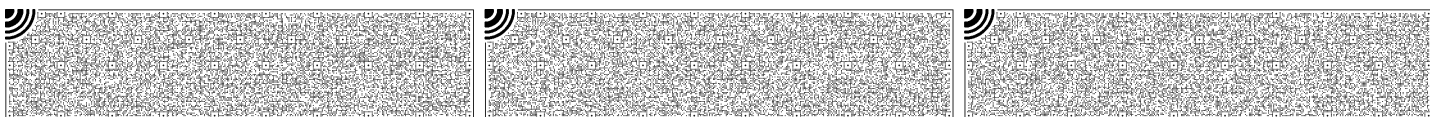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5. 18.

주 문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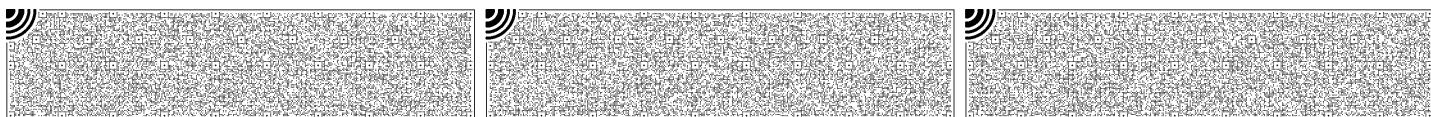
【별 지】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

202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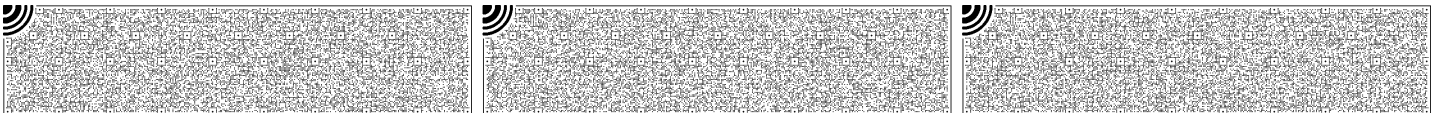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 | |
|---------------------------------------|-----------|
| I. 추진배경 | 1 |
| II. 일반 현황 | 2 |
| III. 현황 및 문제점 | 3 |
| ①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부족 및 관리지침 부재로 인한 이용 제한 | 3 |
| ② 가족 친화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존재 | 8 |
| ③ 미흡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수요자 접근성 약화 | 10 |
| IV. 개선방안 | 11 |
| ① 장애인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의·샤워실 및 이용지침 마련 | 11 |
| ② 가족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의·샤워실 마련 | 14 |
| ③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운영정보 제공 강화 | 14 |
| V. 조치사항 및 기한 | 15 |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1.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 4. 차별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

○ 그간 정부와 지방정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속 추진

※ 전국 공공체육시설 수(문화체육관광부) : ('20년) 31,554개소 → ('24년) 38,603개소

○ 이러한 노력으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영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인기 생활체육 종목으로 정착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

·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30분 이상) : ('20년) 60.1% → ('25년) 62.9%

·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 : (1위) 걷기 40.5%, (2위) 보디빌딩(헬스) 17.5%, (3위) 등산 17.1%, (4위) 요가·필라테스·태보 9.3%, **(5위) 수영 7.9%**, (6위) 달리기 7.7%

○ 그러나, 장애인 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편과 가족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 (장애인)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된 공공수영장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과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가족 단위 이용객) 유아나 고령자와 같이 혼자 탈의·샤워가 어려운 가족을 동반한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면 함께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어 공공수영장 이용에 제약

○ 이에, 공공수영장의 장애인과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 2030자문단 2025년 3분기 정책 제안 사항



II. 일반 현황

□ 공공체육시설 구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 구 분 | 내 용 |
|-----------------|-----------------------------------------------------|
| 전문체육시설 (제5조) |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
| 생활체육시설 (제6조) |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직장체육시설 (제7조) |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상시 근무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을 대상으로 함) |

※ 법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방 및 이용행태 등에 따라 전문체육 또는 생활체육의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음

□ 국민체육센터

- 국민 체육 활동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정부에 국민 선호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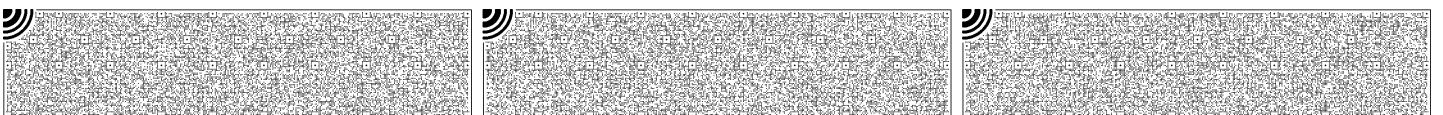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1개소당 20~30억 지원 / 해당 시설은 지방정부 소유이나 명칭은 '국민체육센터'로 표기해야 함

□ 지방정부 공공수영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공공체육시설 현황)

- 지방정부 소유 수영장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4년 12월 기준 574개소, 이 중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215개소

(단위 : 개소)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지방정부 공공수영장의 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수) | 474 (147) | 492 (148) | 512 (158) | 542 (186) | 574 (215) |



Ⅲ.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부족 및 관리지침 부재로 인한 이용 제한

현황

- (장애인 탈의·샤워실)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1998년 시행)
 - 공공운동시설 대해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를 권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시행)
 - 지방정부가 건립한 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탈의·샤워 시설 설치 의무 부여(설치 의무 적용 시기는 지방정부의 인구 수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설치의무 및 적용시기 규정>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별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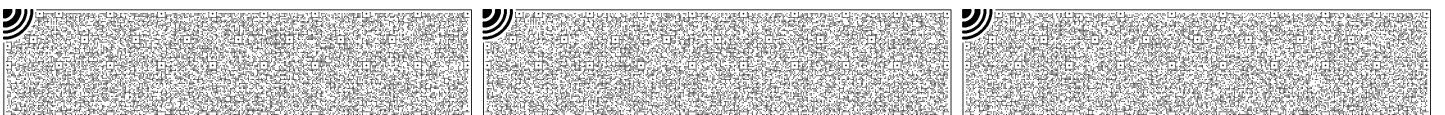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I. 시설의 종류

| 구분 | | 시설설치 내용 |
|----------|-------|----------------------------------------|
| 공통 필수 | 편의 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 실내 시설 | 수영장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 (표) 장애인 탈의·샤워실 운영 현황(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6.2월) >

(단위 : 개소)

| 지역 | 공공수영장 수 | 장애인 탈의·샤워실 설치 수영장 수 | 지역 | 공공수영장 수 | 장애인 탈의·샤워실 설치 수영장 수 |
|----|---------|---------------------|----|---------|---------------------|
| 서울 | 101 | 27 | 강원 | 36 | 14 |
| 부산 | 23 | 9 | 충북 | 26 | 16 |
| 대구 | 20 | 5 | 충남 | 24 | 11 |
| 인천 | 27 | 8 | 전북 | 28 | 7 |
| 광주 | 10 | 6 | 전남 | 28 | 9 |
| 대전 | 18 | 5 | 경북 | 42 | 14 |
| 울산 | 17 | 4 | 경남 | 52 | 21 |
| 세종 | 5 | 2 | 제주 | 14 | 9 |
| 경기 | 155 | 84 | | | |
| 합계 | | | | 626 | 251 |

※ 243개 지방정부 중 238개 지방정부 자료제출

문제점

□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부족

-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된 수영장의 수가 부족해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 전국 지방정부 소유 수영장 626개소 중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된 수영장은 251개소(40.1%)에 불과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설치 의무가 2015년 4월부터 전 지방정부로 확대되었음에도 시설 미비 상황 지속

※ 2015년 이후 건립된 공공수영장 267개소 중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수영장 84개소(31.5%) (권익위 실태조사, 2026년 2월)



- 장애인 탈의·샤워실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설치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관련 언론 보도 >

- “지체장애인 공공수영장 입장 제한은 부당” 시정 요구...00시 “OK”(25.11월)
 - 지체장애인 A씨가 배우자와 함께 공공수영장을 방문해 수영장 입장을 요구했지만 수영장 측은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없어 동성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입장을 제한한 사례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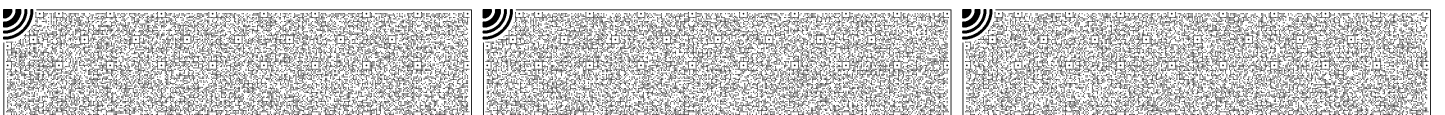
- 장성한 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수영장 이용 시 성별이 다른 부모는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어 항상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처럼 수영장마다 탈의와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애인 공간이 있다면 수영장 사용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24.7월, 대구광역시)
- 뇌병변 2급 장애 아들과 같이 수영장에 다니고 싶습니다. 체육센터에는 일반인 탈의실과 샤워장만 있어 지체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과 샤워장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경상북도)
- 9살 자폐 스펙트럼장애 남자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이어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데 장애인탈의실,가족탈의실이 없는 이유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탈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1월, 경기도)

□ 이용 지침 부재에 따른 현장 혼선 및 불합리한 이용 제한 발생

-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관련 지침·매뉴얼 등이 없어 이용대상 기준이 수영장 운영기관*마다 제각각

* 지방정부(직영),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시설공사·공단), 민간업체 등

- 일반 남·여 탈의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임에도 불합리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 다수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장애인과 보호자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사례 >

- 장애인인 어머니를 00수영장에 방문했습니다.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난처해 하시며 공공장소인 탈의실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24.6월, 전북특별자치도)

< 장애인과 보호자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사례 >

- 장애인활동지원사인 제 아내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1급 장애, 하반신 마비)을 모시고 00수영장 장애인 탈의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측은 아내와 장애인분이 성별이 같아 장애인 탈의실 이용은 안되고 일반 탈의실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제지했습니다. 장애인분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아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25.4월,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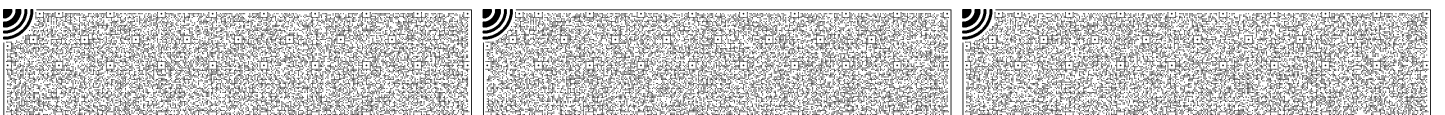
< 장애인의 **연령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사례 >

- 아들이 13세이지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서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와 아들이 00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지만 보호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 미취학 아동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설명해도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25.7월, 경기도)

<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 사례 >

- (시각장애인 단체가 민원 대리 작성) 시각장애인인 민원인이 요양보호사와 함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시설은 신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25.8월, 강원특별자치도)
-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평소에 00수영장 아이와 함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수영장 직원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용을 막았습니다. (24.5월, 경기도)

- 시설 파손, 위생 불량, 부당 전용 등 관리 부실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시설 파손 및 위생 관련 사례 >

- 장애인 탈의실·샤워실 내 벽면 안전손잡이와 벽면 접이식 전용의자가 파손되어 수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2.8월, 충청남도)
-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수리 중이라는 이유로 6개월 동안 폐쇄 상태입니다. 수영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수리 예산이 없고 장애인 이용이 거의 없어 내년이나 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24. 7월, 경기도)
- 장애인 샤워 의자와 탈수기에 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언제 청소했는지 가늠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24.11월, 울산광역시)

< 다른 용도로 부당 이용 사례 >

-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수영장 강사진 전용 탈의·샤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구청 차원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서울특별시)
-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이유로 강사님들 휴게실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 하기 힘드네요. 시설을 원래 용도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24.9월, 충청남도)



2 가족 친화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존재

현 황

-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탈의·샤워실의 남녀 혼욕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다수 공공수영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만 4세 이상의 남녀 혼욕을 제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문제점

- 유아나 고령자와 같이 혼자 탈의·샤워가 어려운 가족을 동반한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함께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어 공공수영장 이용에 제약 발생
 - ※ 특히,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녀·모자 한부모가족은 수영장 이용의 제약이 더 큼
- 유아·고령자와 보호자간 성별이 다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탈의·샤워시설 부족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시설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 ※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외에 별도로 가족 탈의·샤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수영장은 전국에 22개소에 불과(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6년 2월)

< 국민신문고 사례 >

< 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요구 민원 >

- 00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두 딸아이가 수영장을 가고 싶어 하는데 6살, 7살이라 남자탈의실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00시 공공수영장 한 곳이라도 가족 탈의·샤워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2.8월, 강원특별자치도)
- 최근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는 미취학 아동과 함께 오는 부모, 고령 부모를 모시는 자, 또는 일시적 회복기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동반 이용하는 보호자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아동 또는 노약자가 함께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공수영장에는 이를 위한 가족용 탈의실이 없습니다. 공공수영장 내 가족탈의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25.5월, 경기도)

<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대상 확대 요구 민원 >

- 00수영장 내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 공간을 장애인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 운영이며, 다양한 가족 형태(한부모, 맞벌이, 보호자 부재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25.6월, 경기도)

< 관련 언론 보도 >

- “8살 아들이 뭘 안다고, 女탈의실 출입을 막아요? 너무 각박하다는 엄마(‘25.11월)
- 수영장 갔다가 발길 돌린 엄마의 하소연 ‘갑론을박’
- 수영장에 가족 ‘가족 탈의실’ 있었으면...가족간 동성 아니면 함께 못가(‘24.9월)
- 00군이 운영 중인 00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소외계층을 비롯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가족 탈의실(샤워실)’ 필요하다는 요구 제기



3 미흡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수요자 접근성 약화

현황

○ 대다수의 공공수영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정보*가 안내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장애인 탈의·샤워실 설치 여부, 이용대상, 이용방법 등

-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50개소 공공수영장의 홈페이지 및 해당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2건*에 불과

* 광주광역시, 경기 양주시

<(참고) 광주광역시 사례 : 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수영장 목록 홈페이지 게시>



새소식
 > 문화체육 소식 > 새소식

공공수영장 가족탈의실 운영현황

작성일: 체육진흥과 | 작성일: 2023-07-03 08:36 | 14회

파일 공공수영장 가족탈의실 운영현황.hwp

생필이 다른 장애인 가족을 위한 공공수영장 가족탈의실 운영현황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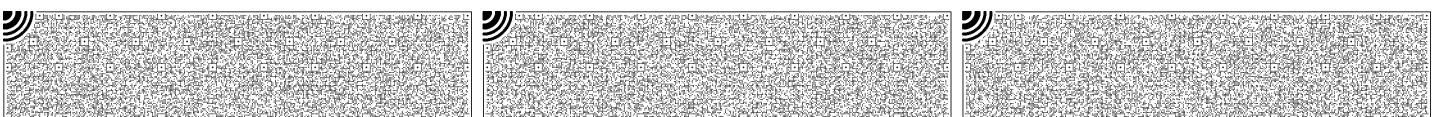
□ 공공수영장 가족탈의실 운영 현황

| 연번 | 시 설 명 | 주소 | 가족탈의실 | |
|----|------------------|------------------|----------------|----------|
| | | | 운영유무 | 연락처 |
| 1 | 동구문화센터 수영장 | 동구 남문로 646 | × | - |
| 2 |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17 | ○ (별도공간 활용) | 351-0076 |
| 3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실내수영장 | 서구 상무자유로 73 | × | - |
| 4 | 상무국민체육센터 | 서구 상무자유로 69 | ○ | 601-6063 |
| 5 | 염주실내수영장 | 서구 금화로 278 | ○ (별도공간 활용) | 380-6811 |
| 6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영장 | 남구 덕남길 7 | × | - |
| 7 | 남구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 남구 화산로 110 | × | - |
| 8 |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 남구 대남대로 308번길 20 | ○ | 352-8700 |
| 9 |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 북구 필문대로 55 | ○ | 524-0730 |
| 10 | 북구 건강복지센터(우산수영장) | 북구 중문로 62 | ○ (별도공간 활용) | 267-8850 |
| 11 |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수영장 | 북구 북문대로 219 | ○ | 513-0038 |
| 12 | 빛고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 × | - |
| 13 |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 광산구 칠단중앙로 23 | ○ (별도공간 활용) | 460-2021 |

문제점

○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이 설치된 공공수영장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짐

- 공공수영장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정보가 안내되어 있지 않아 유선 문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요자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IV. 개선방안

1 장애인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의·샤워실 및 이용지침 마련

□ 장애인 탈의·샤워실 마련

- 지방정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관내 공공수영장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세부기준을 충족한 장애인 탈의·샤워실 설치 **정책제안**

- ※ 실내 수영장 내부에 유히공간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 ※ 신규·증축 수영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권고 및 정책제안 대상에서 제외

< 참 고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 닷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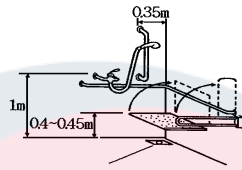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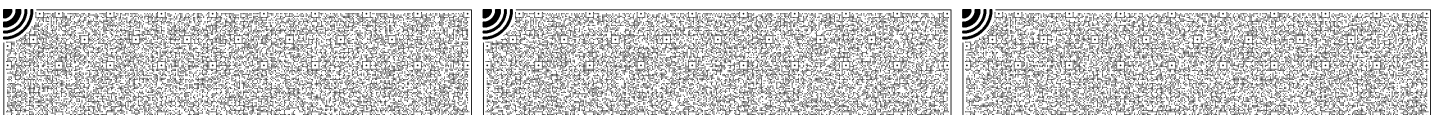
□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지침 마련

- (지방정부) 공공수영장 장애인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 후 관내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지침(계획)을 수립
 - 해당 내용을 개별 수영장 내부 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
 - ※ 장애인 탈의·샤워실 미설치 수영장은 제외

< 이용지침·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1.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 대상

- ▶ 일반 남·여 탈의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함을 명시
 - ※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 장애인 연령, 장애 유형 등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
- ▶ 장애인 외에 유아·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에게 개방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이용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2. 주기적 현장 점검 계획

- ▶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시설 현장점검 실시

※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대상, 이용빈도, 시설파손 여부, 위생상태 등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의 설계·운영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운영기준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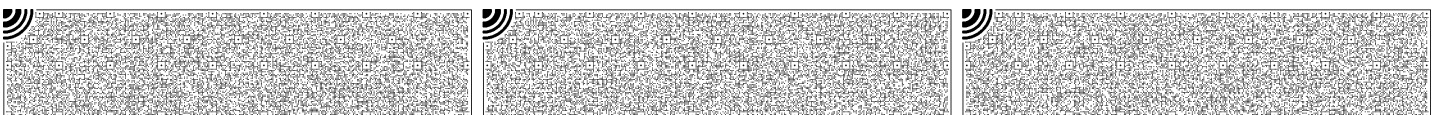
- ⇒ 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에 반영

* 지방정부가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준비, 설계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2018년 발간)

**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운영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 중(2026년 중 개발 연구용역 예정)

< 가이드라인 / 매뉴얼 (예시) >

| 시설 | | 운영(안) |
|-----|------------|-----------------------------------------------------------------------------------------------------------------------------------------------------------------------------------------------------------------------------------------------------|
| 수영장 | 장애인 탈의·샤워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남·여 탈의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 ▶ 장애인 외에 유아·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에게 개방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이용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시설 설치 여부, 이용대상, 이용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안내 |



2 가족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의·샤워실 마련

- (기존 수영장) 관내 공공수영장에 유아·고령자와 보호자간 성별이 다른 가족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 **정책제안**

※ 기존 실내 수영장 내부가 협소해 별도의 탈의·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시

- (신축·증축 수영장) 향후 수영장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유아·고령자와 보호자간 성별이 다른 가족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

※ 야외 공공수영장(계절 운영 야외 물놀이장 포함)에도 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 시설 설계 반영 가능 시점을 고려해 '27년 착공 수영장부터 적용

3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운영정보 제공 강화

- 지방정부 및 개별수영장 홈페이지에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여부, 이용대상, 이용방법 등 상세정보를 안내·게시

※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미설치 수영장도 미설치 사실을 홈페이지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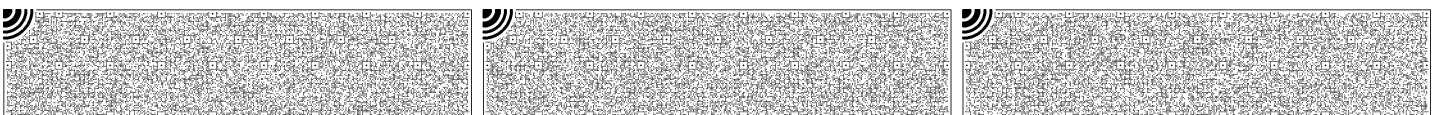
※ 수요자가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설 사진 게시 권장

V.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광역·기초 지방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과제명 | 조치사항 | 소관기관 (조치기간) |
|-------------------------------------------------------|-------------------------------------------------------------------------------------------------------------------------------------------------------------------------------------------------------------------------------------------------------------------------------------------------------------------------------------------------------------------------------------------------------------------------------------------------------------------------------------------------------------------------------------------------------------------------------------|------------------------------------------------------------------|
| 1. 장애인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의·샤워실 및 이용지침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탈의·샤워실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공공수영장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충족한 장애인 탈의·샤워실 설치 | <p>광역·기초 지방정부 (정책제안)</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공공수영장 장애인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지침(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내용을 개별 수영장 내부 규정에 반영 되도록 조치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의 설계·운영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운영기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에 반영 | <p>광역·기초 지방정부 (27.3월) / 문화체육관광부 (26.12월)</p> |



| | | |
|---------------------------------------------------------|-------------------------------------------------------------------------------------------------------------------------------------------------------------------------------------------------------------------|-----------------------------------------|
| <p>2. 가족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의·샤워 시설 마련</p> | <p>□ (기존 수영장) 관내 공공수영장에 유아·고령자와 보호자간 성별이 다른 가족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p> | <p>광역·기초 지방정부 (정책제안)</p> |
| | <p>□ (신축·증축 수영장) 향후 수영장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유아·고령자와 보호자간 성별이 다른 가족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p> <p>※ 야외 공공수영장(계절 운영 야외 물놀이장 포함)에도 가족 탈의·샤워실 설치</p> <p>※ 시설 설계 반영 가능 시점을 고려해 '27년 착공 수영장부터 적용</p> | <p>광역·기초 지방정부 (조치기한 없음)</p> |
| <p>3.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운영정보 제공 강화</p> | <p>□ 지방정부 및 개별수영장 홈페이지에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여부, 이용대상, 이용방법 등 상세정보를 안내·게시</p> <p>※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미설치 수영장도 미설치 사실을 홈페이지에 안내</p> <p>※ 수요자가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설 사진 게시 권장</p> | <p>광역·기초 지방정부 (26.7월)</p> |



참고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 8. (생략)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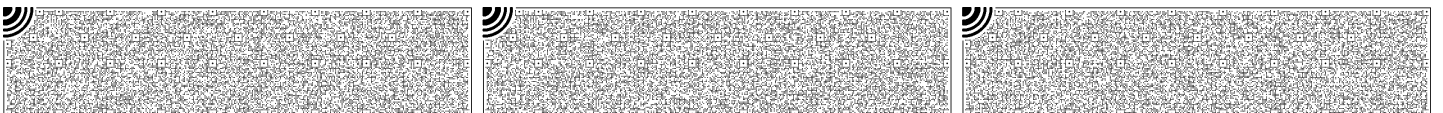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반사항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 기준 |
|-----------------------------|------------------------------------------------------------------------------|
|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편의시설 대상시설 | 매개시설 | | | | 내부시설 | | 위생시설 | | | 샤워실 · 탈의실 |
|----------------------------|----------|-----------|---------------|---------|------|-----------|------|-----|-----|-----------------|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 (㉠)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 | |
| | | | | |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욕실 |
| 운동시설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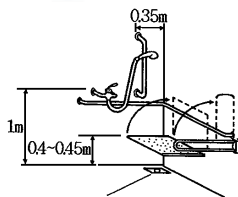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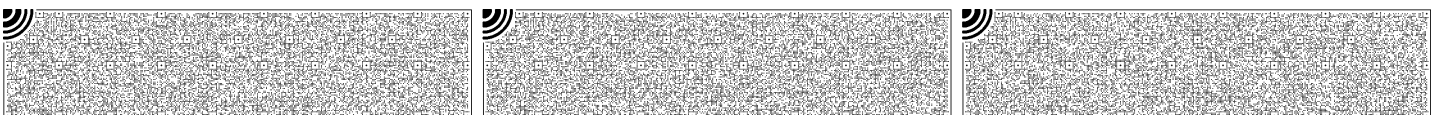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앞의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시행령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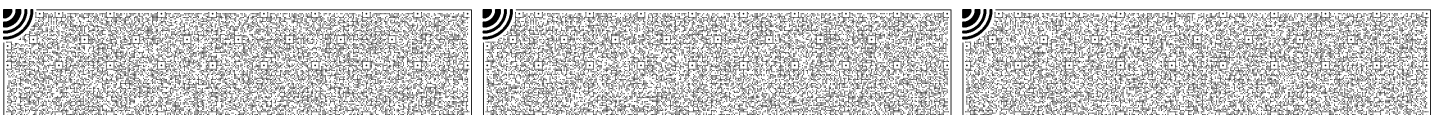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I. 시설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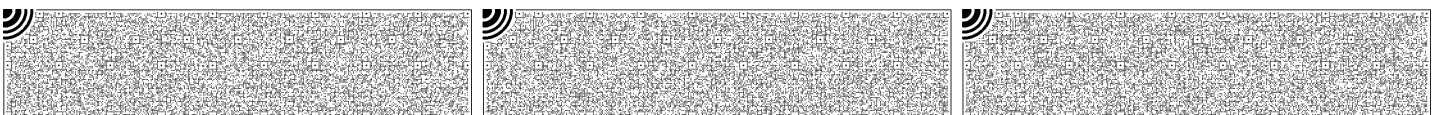
| 구분 | | 시설설치 내용 |
|------------------|-------|---------------------------------------------------------------------------------|
| 공 통 필 수 | 편의 시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 2호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 | | |
|-------|----------|--------------------------------------------------------------------------------------------------|
| |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 실내 시설 | 수영장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
| |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 실외 시설 |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
| |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5월 18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권 석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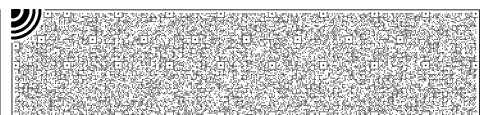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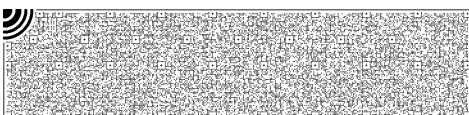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흥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을

위원 신 상 욱



정 본 입 니 다 .

2026. 5. 18.

국 민 권 의 위 원

